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소진혁 의원 외 7인

2. 제안이유

-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처리인력 부족과 수거체계 미흡, 처리비 부담 등으로 인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안 제4조~제5조)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한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안 제6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1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¹⁾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 검토 결과,

- 최근 10년('14~ '23)간 국내 산불 발생요인으로는 입산자 실화(33%)에 이어 소각산불(24%)이 두 번째로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영농부산물의 처리 체계의 미흡으로 농가에서는 여전히 불법 소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1) 영농부산물 :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고춧대, 깻대, 콩대, 과수 전정가지 등)

-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 부산물 처리 교육 등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농부산물 수거, 처리 관련 농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소각에 따른 산불 위험 및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농촌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영농부산물의 올바른 처리방법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불법소각 및 영농폐기물 불법방치에 대한 계도 및 단속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별표 - 참고자료(2024. 7. 기준)

④ 10년간 원인별 산불발생 현황

구분	2024.07.12 까지		10년평균(2014년~2023년)		2023년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입산자실화	38	9.96	186.2	688.04	170	1,390.63
농산부산물소각	21	5.17	67.8	78.39	56	264.22
쓰레기소각	21	6.49	71.4	242.14	73	745.57
담뱃불실화	28	13.24	33.6	174.60	56	1,469.14
건축물화재비화	11	6.17	33.7	50.45	41	38.26
기타	93	52.21	174.1	2,770.04	200	1,084.30
합계	212	93.24	566.8	4,003.66	596	4,992.12

※ 「산림보호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산불관리통합규정」 제33조에 따라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처: 산림청 홈페이지